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8. 4. 16

나. 회부일자 : '98. 4. 16

3. 제안이유

-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('98. 2. 20)되면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, 노동쟁의 행위의 중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이 시도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, 이들 사무를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무를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위임
(단, 2개시군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은 제외)
 - 노동조합 설립,변경,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
 -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,처분의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
 -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

- 노동쟁의 행위의 중지명령 및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
-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등

※'97.3.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국가(노동부)로 환수되었다가 다시 시도로 이관된 사무임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노동관계 사무중 일부가 시·도로 이관되어짐에 이를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재위임 하려는 것이며

주요골자에 있어서는

- 첫 째, 노동조합의 설립,변경,행사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
- 둘 째,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·처분의 시정명령
- 셋 째,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
- 넷 째, 쟁의행위의 중지명령
- 다섯째,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등으로 이의 사무중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 위임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